

02

사이버 성폭력과 여성분노의 조직화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대표

들어가며

2018년 9월 13일 최모 씨는 연인이자 배우 구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최 씨와 구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이 사건의 전모가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평소 최 씨는 구 씨에게 다정하다가도 남자 얘기만 나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최 씨가 배우 구 씨에게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며 협박한 후에 연예전문 온라인신문인 디스패치에 “구** 제보 드릴 테니 전화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기겠다.” 등의 제보를 하고 난 후 구 씨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후 또 다시 디스패치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어요.”라는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¹⁾

구 씨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는 남자친구를 맨발로 따라 나와 무릎을 꿇었을 때는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 여성인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때, 유출한 가해자를 탓하기에 앞서 피해자에 대해 인격살해에 비유되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구글 트렌드 분석결과 ‘구**동영상’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²⁾ 댓글로 ‘구**동영상’ 구한다는 댓글이 잇달았다. 일부 낚초 사이트에서 이 협박영상이 나오면 20만 원에 사겠다고 하며 이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구 씨의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성관계 영상으로 유포 협박 하는 가해자에 대해

1) 출처: 디스패치 홈페이지 <https://www.dispatch.co.kr/1509134>2) 서울경제. 2018. 10. 7. 장주영 기자 보도. <http://www.seaily.com/NewsView/1S5TK8LOVL>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단 사흘 만에 20만 건이 넘을 만큼 유포 협박 피해에 공감하고 유포범죄의 극악함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 한국에서는 연인관계에서 짝은 성관계 동영상이 남성에게는 연인을 협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여성에게는 인격살해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인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불안/공포 피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이다. 사이버성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첫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모멸감을 유발케 한다. 둘째,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 및 신호(문자, 음성 등)를 전시 하는 유포 범죄이다. 셋째, 유포범죄를 유인, 방조, 협력하는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범죄이다. 넷째, 상업적 목적으로 실제 성행위 영상 등 불법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범죄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전형적인 젠더기반 성폭력 범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각급 법원에서 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표 1>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유형		내용	예시
디지털매체 이용	촬영	- 비동의 성적 촬영	- 비동의 성적 이미지 촬영 행위 - 비동의 성관계 촬영 행위
	편집 및 조작	- 비동의 성적 이미지 편집	- 지인 및 불특정인 성적 이미지 영상 편집 및 합성 등 조작 행위
통신매체 이용	유포	-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비동의 유포 -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비동의 유포 - 영리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 방조 협력하는 행위	- SNS - 커뮤니티 - 불법사이트 - 특수부가 온라인사이트(웹하드/P2P 등) - 영상유포 행위자 - 해비업로더 -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
	성적 괴롭힘, 사이버스토킹	- 성적 신호(음성, 문자) 및 영상 등으로 타인의 성적 모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언행	-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이미지 무단 게시 - 성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 보내기 - 성적 내용의 악플 등 -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 음란물 링크 및 파일 보내기
디지털매체 통신매체 복합이용	포르노 제작 및 유포	- 상업적 목적으로 실제 성행위 장면 영상 등 불법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	- 성행위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성인등급 영상물과는 다른 것임

총 1,866건을 분석하였는데, 사건 피해자의 99%가 여성으로 나타났다.³⁾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한 결과도 피해자의 93.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8년 9월 26일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 피의자의 97%가 남성이며 피해자의 83%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이라는 젠더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범죄이다. 잠재적 피해자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공포가 훨씬 크다.

여성들이 느끼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불안/공포피해는 사이버 성폭력이 갖는 특성들로 인해 극대화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발현/확산되는 범죄로 첫째, 디지털기기는 비대면적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가해자/피해자라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알 수 없는 눈(카메라/남성)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이 무작위적으로 촬영되어 다수의 타인들에게 전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긴장된 일상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특성이 여성들에게 가중된 불안 공포를 야기 시킨다.⁴⁾ 둘째, 사이버공간은 시공

간의 초월성이 있다. 클릭 한 번만이라도 과거의 피해영상이 무한 반복 재생될 수 있고 지역성을 파괴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 피해영상이 클릭되는 순간 피해자는 클릭하는 사람에게 1차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영상의 확산에 비례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파괴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를 치유할 최소한의 시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피해여성들의 사례를 접한 여성들은 생존적 위협을 느끼게 된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 성적 이미지로 전시된 여성은 사물화 되는 반면에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시청하는 위치에 있는 남성은 폼핑하는 서사권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별구도가 사물과 권력자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위계화되었을 때, 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극단적인 형태로 작동될 수 있다. 남성권력자에 의해 여성은 혐오적 존재로 낙인되고 이것이 낙인효과⁵⁾를 낳는다. 넷째, 피해자가 피해사건을 인지하기도 매우 어렵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범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인에 의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약 15.7% 정도이다. 나머지는 첫 대면 후 불법 촬영되거나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 의해 불법촬영된 경우이다.⁶⁾ 실제 2018년 5월 언론에 떠들썩했던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기숙

3)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8),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15면.

4) CBS노컷뉴스. 2018. 7. 17. 김형준 기자. "모텔에 4년 몰카, 잡고보니 2만 건 녹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02080>

5) 낙인효과 :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烙印, stigma, 스티그마)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은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게 된다.(출처: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6) 연인 및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몰래 혹은 동의하에 찍힌 성적 영상이 비동의하에 유포 혹은 유포 협박 및 유포 불안 등의 피해는 불특정인에 의해 불법촬영되는 범죄피해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공포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친밀한 관계마저 의심과 불안의 정서로 대해야 하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는 그런 점에서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된 영상이 SNS(텀블러)상에 유포되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되기 전까지도 정작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 무려 3시간 이상 지속된 영상들 속에서는 주로 여학생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이 촬영되었다.⁷⁾ 촬영 이후 유포되어 피해영상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영역까지 확산된 이후에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확산 차단 및 복구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든다.

급증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현황과 사법기관의 대응

불안공포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갖는 심각성은 실제 피해와 사법부에서 처리되는 사건현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문지선 검사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처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핸드폰에 있는 불법도촬 사진들중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한 바 있다.⁸⁾

암수율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7년~

2016년) 전체 성폭력 범죄는 2007년 14,344건에서 2015년 31,063건, 2016년 29,357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이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점한 비율은 2007년 564건으로 3.9%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5년에는 7,730건으로 24.9%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2007년 240건(1.7%)이었던 것이 2015년 1,139건(3.7%)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가 보여 주듯이, 사이버 성폭력의 증감이 전체 성폭력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표 2> 참조)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의 이유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메라 등이용촬영범죄 등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40대 인구의 95.5%가 인터넷 사용 인구로 한국사회는 온/오프의 경계가 무의미하며, 온라인의 문화와 범죄가 오프라인과 연동되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사이버 성폭력범죄는 종종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인 폭력이나 갈취, 성매매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파생범죄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⁹⁾

대검찰청의 범죄통계가 실제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동안 사법기관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조차

7) 9월 6일에도 서울·경기일대에서 찍힌 것으로 유추되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과 교복치마 속 사진들이 SNS(텀블러)에 유포되어 해당 수백 원(뮤음파일의 경우 수만 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상조사 중이며 향후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2018년 9월 6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610125604095>
8) 2017년 7월 7일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유승희 국회의원·진선미 국회의원·권미혁 국회의원 공동 주최.
9)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1669178.html>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최초로 찾게 되는 곳은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일선 경찰서는 물론이거니와 17개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 성폭력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신고접수 매뉴얼조차 없었으며 경찰서에 따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접수 및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여성청소년계에서 신고접수 및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여성피해자의 신고접수가 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여성청소년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의 경우 사이버 성폭력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용어 및 인터넷 환경,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경험이 있는 수사관도 적어 신속 정확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특성 파악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이로

〈표 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7년~2016년)

(단위: 건(%))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상해/ 치사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07	2,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	240 (1.7)	939 (6.5)	14,344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378 (2.3)	854 (5.3)	16,129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41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대검찰청(2017), 「2016 범죄통계」, 15면 참조.

인해 피의자의 신상 확보 및 증거, 재유포 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¹⁰⁾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숙한 수사단계의 대응은 낮은 기소율로 이어진다.

대검찰청의 연도별 검찰연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연도별 접수 및 처리 현황(기소율)을 보면, 2014년 3,423건이 접수되어 1,499건(43.7%)이 기소되었다. 2015년에는 5,104건으로 접수가 증가하였지만 기소된 것은 1,596건으로 기소율은 31.2%에 불과하다. 2016년에도 5,852건 접수에 1,846건 기소로 31.5%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기소율 72.6%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렵게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자행된 범행에 비해 현저히 낮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통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심 양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촬영죄와 유포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중범죄의 경우에도 선고유예(7.35%)와 집행유예(36.36%)를 합쳐 처벌이 유예된 경우가 총 43.71%로 가장 많고 벌금형은 약 28.79%인데 벌금형의 경우는 대부분이 500만 원 이하(78.95%)로 선고되었다. 징역형의 경우는 약 27.27%에 불과하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피해가 인격살해에 준하고 사회권이 거의 박탈되는 수준의 피해인 것에 반해 처벌은 매우 미약하다.¹¹⁾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법의 문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그러나 위의 법은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타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상 속 피해자(원치 않게 시정하게 되는 피해 문제와 별도로)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흠결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의 판결처럼 개인이 입은 현실적 피해를 반영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을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처벌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¹²⁾

이는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디지털기기의 특성상 재생된 영상을 촬영한 영상은 원본영상과 거의 같은 영상물로서 기

10)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서별로 담당 부서가 모호해서 접수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이버 성폭력 특성에 조응하는 신고접수 및 수사 매뉴얼이 없다보니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접수하는 것조차 어렵고, 심지어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유포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신상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를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대면을 극도로 기피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비합리적 태도를 접하게 되면 스스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기피하게 된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사적인 구제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유포영상 삭제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11)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8),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17면.

12) 투데이신문 2018년 9월 23일 김태규 기자 보도.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92>

〈표 3〉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

법 조항	내용	문제점
성폭력처벌법	<p>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p> <p>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불법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직접 전시하여 불법촬영된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처벌 공백
	<p>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항</p> <p>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공백 - 합성 등의 편집물에 대한 처벌 공백
	<p>제14조 2항</p> <p>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불법촬영된 것보다 이후 공공연하게 전시되어 파생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이 양형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p>제14조 3항</p> <p>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정보통신망법	<p>제44조의 7항 음란물유포죄</p> <p>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74조 벌칙</p> <p>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
청소년성보호법	<p>제2조5호</p> <p>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p> <p>제11조</p> <p>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는 지속적인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 행위를 유발시킴으로써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데, 온라인 비접촉 성학대는 오프라인의 성학대의 전(前) 과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p>

법 조항	내용	문제점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 효과는 원본영상이든 재생영상이든 본질적으로 같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오히려 재촬영 재유포라는 우회를 통하면 범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공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영상의 합성 조작 등의 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 타인의 신체와 얼굴이 합성되어 영상 속 피해자는 성적 대상화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성폭력 처벌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¹³⁾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처벌 양형도 낮지만 재범 방지 장치도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 부재하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성폭력 범위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과정 및 제안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¹⁴⁾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

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미약하다.¹⁵⁾ 특수부가온라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웹하드는 공유서버를 제공하여 영상콘텐츠의 업로더와 다운로드를 매개해주고 이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2012년 웹하드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가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나 다운로드할 때에 반드시 불법콘텐츠(불법촬영/유출피해영상 및 성기노출포르노물)를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케 하였으며, 그 밖에도 2인 이상 모니터링직원을 고용하여 불법콘텐츠의 사후 삭제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웹하드등록제 이후에도 웹하드에 상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십만 건의 영상이 있다는 것은 웹하드가 필터링 기술조치를 우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¹⁶⁾ 웹하드는 불법콘텐츠(불법제작물이나 피해영상 등)의 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터링 기술사업자와 기술제휴를 맺고 기술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지만 탈법적으로 기술제휴계약서(종이계약)만 맺고 사실상은 기술조치 시스템은

13) 형법으로는 처벌 가능

14)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8),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61면.

15)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영상물 유통의 75%가 웹하드(특수부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이고 19%가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거래이다. 2017년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불법포르노사이트(37.8%) SNS(25.5%) 웹하드(14.3%)의 순으로 불법촬영피해영상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으나, 불법포르노사이트에 불법촬영영상을 올리는 업로더가 자신의 대용량자료실로 특정 웹하드를 링크 시키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불법촬영영상물의 유통에 있어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무색할 지경이다. 또한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은 특정인들만이 이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불법포르노사이트나 SNS에 유무명 개인들이(소매상) 불법촬영물들을 수집하여(중간도매상) 소위 일반인의 이용자가 많은 웹하드(대형마켓)에 넘기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16) 2015년 7월 5일 KBS 뉴스 노태영 기자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07618&ref=A>

운영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대에 일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¹⁷⁾

웹하드가 필터링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방조 협력했다면, 이는 불법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자와 정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여주듯이 웹하드는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해비업로더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중국인의 신상을 대신 넘기는 등의 불법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난 9월 28일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자의 입장으로 나온 민감응 경찰청장은 현재 30개 웹하드에 대한 수사 중 1개 웹하드는 정범으로 입건 수사 중이며 4개 웹하드는 사이버 성폭력 유포방조죄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범으로 웹하드가 수사 중이라는 것은 웹하드와 필터링 기술사가 유착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이버 성폭력 영상을 유통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문제는 웹하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웹하드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방통위의 대응은 지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¹⁸⁾

방통위는 자체 모니터링기구를 두어 24시간 웹하드에 올라오는 불법촬영물(제작형 음란물 포함 성기노출 불법촬영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시값으로 추출하여 해당 웹하드에 보내서 사후 삭

제토록하고 동시에 웹하드의 필터링 기술사에 보내서 사전 차단케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웹하드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면 웹하드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수십 만 건의 불법촬영물이 웹하드에서 유통되며 웹하드 등록취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상의 공포가 분노로 조직되는 여성시위

2018년 5월 19일 오후 3시 혜화역 2번 출구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3시30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수천 명의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4시간 동안 진행된 시위 내내 만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함께 했다.

이들이 거리시위에 나서게 된 것은 일명 ‘홍대 누드크로키모델 불법촬영사건’을 둘러싼 경찰수사발표 때문이었다. 5월 1일 오후 한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튿날 삭제되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홍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 중에 불법 촬영된 것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으로 내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10일 경찰은 동료 여성모델을 혐의자로 입건했고 여성모델은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졌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에 대해

17) 일간스포츠 2017년 10월 16일 김은애 기자 보도.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017602&doc=

18) 한국일보. 2017년 8월 14일 맹하경 기자 보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8141467731322>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간 불법 촬영범죄피해자가 여성이었을 때 경찰이 보여주었던 대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에 대해 여성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이전에는 불법촬영범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대중에게 공개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의문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다.

여성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10일, 한 포털사이트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가 개설되었다. 사안의 긴박성 때문에 핸드폰으로 카페를 개설했다는 카페지기의 글과 함께 바로 시위조직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위준비자원자와 후원금으로 조직하고 집회신고와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 등 불과 일주일 만에 시위가 준비되었다.¹⁹⁾ 애초에 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위규모가 만여 명으로 확대된 것은 그만큼 '불법촬영범죄를 둘러싼 여성들의 피해와 분노'가 컸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1차 시위 이후 카페는 '불편한 용기'로 이름을 바꾸었다. 회원가입도 점점 늘어 10월 현재는 4만 6천 명이 넘는다. 자발적인 후원과 행사지원자들의 수도 커져 갔다. 매달 진행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파장도 커져 갔다.

살인적인 폭력을 뚫고 제4차 광화문 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의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의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점점 다양해졌다. 참가자들이 손수 만들어진 피켓에 담긴 요구들을 보면 시위의 성격이 분명

해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너희의 포르노가 아니다", "몇 년 전 한 줌의 재가 된 내 친구는 어쩌서 한국남자들의 모니터 속에 **대 **녀라며 아직 살아 있는가?", "울지마 지워줄게 죽지마 지켜줄게 우리가 싸워줄게", "우리는 너희의 성적대상이 아닌 변혁의 주체다"²⁰⁾처럼 시위참가자들은 일상에 스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공포에 굴하지 않고, 피해여성과 연대하고 여성혐오문화를 방조하고 양산하는 국가시스템 전반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나아가 스스로 성평등을 위한 변혁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써 시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0월 6일 혜화역에서 개최된 5차 시위는 "불법촬영 편파판결 규탄시위"로 명칭을 바꾸고, 사법권력이 성별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편파판결을 내렸다고 추정되는 재판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항의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일명 "문자총공"²¹⁾을 통해 국회 사법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촬영범죄와 관련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시위를 진행 중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20대 남성은 시위대를 향해 10여 발의 비비탄을 쏘았다. 주최 측은 침착하게 시위대를 안정시키고 집회를 이어 갔지만, 여성들의 합법 시위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테러 위협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후 한 참가자는 무대에 올라 "우리는 놀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라는 절규어린 발언을 했다.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젠더화된 폭력 앞에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여성들의 이미지

19)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 '불법편파수사규탄시위카페' 공지글 참조.
<http://cafe.daum.net/Hongdaenam/ig3k/1>

20) 2018년 8월 4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제4차 규탄시위' 광화문집회 참가자 손피켓 인용.

21) 수만 명의 국민들이 동일 시간에 일제히 국회 사법위 소속 의원에게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법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시위 행동으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6일 당일 "1만5천 건의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폭풍을 뚫고 가두로 나선 여성들은 젠더전쟁에 기꺼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 “여성에게 국가는 있는가”라는 구호가 메아리치는 헤

화역 대학로 거리는 투쟁이 있는 동안만큼은 자유로웠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성들은 분노를 조직화하고 있다.